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1,012,194	29,430,366
일반회계	909,392,758	27,281,783
특별회계	71,619,436	2,148,583
공기업특별회계	56,314,235	1,689,427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036,994	541,11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277,241	1,148,317
기타특별회계	15,305,201	459,15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626,368	228,791
의료보호특별회계	2,948,035	88,441
수질개선특별회계	596,506	17,895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97,515	20,925
주택사업특별회계	488,936	14,668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2,947,841	88,43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52,41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